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	--

제출일자 2008. 5. .

제 출 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유효기간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5년 이상 10년 이내”를 “5년으로” 규정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8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중 “5년 이상 10년 이내로”를 각각 “5년으로”한다고 수정함

3. 참고사항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중 “5년 이상 10년 이내로”를 각각 “5년으로”한다.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를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일요일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4.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제8조제1항제5호 및 제9조제2항 중 “3년”을 각각 “5년”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중 “3년으로”를 각각 “5년으로”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법 제35조제2항”을 “법 제35조제4항”으로 한다.

제24조 중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6호”를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 7호”로 하며, “시설사용계약”을 “시설사용허가 또는 계약”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제3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도매인 본인 또는 대표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신병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을 할 경우 그 기간
2. 해외여행, 연수, 그 밖에 장기 출타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개설자)이 인정하는 사유의 기간

제38조의 제목 “(출하자 등록)”을 “(출하자 신고)”로 하고, 제38조 중 “등록신청서”를 “출하자 신고서”로 한다.

제4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고추, 마, 우엉, 연근, 갓, 취나물, 산나물, 달래, 고사리, 두릅, 고들빼기, 죽순, 무말랭이, 고구마줄기, 토란줄기, 호박고지, 박고지, 콩나물 깐마늘, 고춧가루, 도토리, 오렌지, 바나나, 파인애플, 부추, 적겨자, 청겨자 적근대, 근대, 적치커리, 치커리, 청경채, 파세리, 케일, 뉴그린, 알배기 신선초, 당귀, 비타민, 비트, 알비트, 레드, 치콘, 샐러리, 양상추, 브로콜리 레드쉬, 레몬, 적채, 마늘쫑, 열무, 아욱, 돌나물, 참나물, 비름, 쑥갓, 달래 깐토란, 상추, 파프리카, 무순, 새싹

제4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도매시장 법인이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거래방식으로 전자거래를 하려면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7조제1항 중 “법 제71조제2항”을 “법 제41조”로 하고, “시행규칙 제49조”를 “시행규칙 제37조의2”로 한다.

제6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정가·수의 매매를 전자거래방식으로 거래한 물량에 대하여는 해당 거래금액의 10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62조제4항 중 “시설임대료”를 “시설사용료 또는 대부료”로 한다.

제93조 중 “법 제83조제2항”을 “법 제83조제1항”으로 하며, “시행규칙 제57조”를 “시행령 제36조의4”로 한다.

별표 4, 별표 6,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표 준 송 품 장											
◆ 출하일시 : . . .						◆ 도착일시 : . . .					
수 신			귀 하								
아래 농수산물의 판매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거래형태		매 수				위 탁				중 개	
매매방법		경매·입찰				정가·수의매매				※ 거래형태, 매매방법을 각각 기재	
◆ 출하 내역											
원산지	품목 및 품종	품질인증 번호	우수농산물 관리제도인증번호		거래별 단 량	등급 및 수량					비고
			이력추적 관리번호	특		상	중	하	계		
합 계											
운 입	입금 : 원정 (원)				차 량	기 사 명					
						차량번호					
출하자, 산지유통인	주 소				전 화						
	성 명	(인)			팩 스						
					송금은행						
					송금계좌						
	출하자 신고번호 또는 산지유통인 번호				예 금 주						
매수 또는 중개금액		매수대금 지급일			중 개 상대자						
수령자 :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
2. 수수료, 시장사용료, 하역비 등 제반 비용결정에 관한 사항
3.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제고 및 규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도매시장의 거래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유통축산과장, **과학경제과장**,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9인 이내로 하고, 교수, 시의원, 유통관련전문가, 도매시장 법인대표(**또는 공판장장**), 중도매인대표 등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 관리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당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은 2년으로 한다.

제6조(회의소집 및 의결) 회의소집은 위원(위원)의 1/3이상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지 제9호서식]

사 진 (2.5x3cm)	매매참가인 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 청 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상 호			
	참가시장명			
	사업자 등록 번호			
	거래 품목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구 미 시 장 귀 하				
<첨부서류> 1. 개인의 경우 가.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나. 증명사진 (2.5cm×3.5cm) 3매 2.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1부				

210mm×297mm(중질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사 진 (2.5x3.0cm)		출하자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e-mail)			
	출하 예정 도매 시장			
	취급 부류 (주 품 목)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하자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구 미 시 장 귀 하				
<첨부서류> 1. 개인의 경우 가.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1부 나. 증명사진(2.5cm×3.5cm) 3매 2.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1부				

210mm×297mm(중질지 60g/m²(재활용품))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제4조(휴업일 및 영업시간) ①도매 시장은 다음 각호의 휴업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영업한다. 1. 명절 : 신정, 설날, 추석연휴 2. 일요일 : 4월~10월(첫째, 셋째 주 일요일), 11월3월(매주 일요일) 〈신설〉 〈신설〉 ② (생략) ③ (생략) 제8조(지정절차) ①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경매사 확보계획, 농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등을 포함한다) 6. ~ 7. (생략) ② 지정유효기간은 <u>3년</u>으로 한다. ③ (생략) ④ (생략) 제9조(제지정) ① 도매시장법인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을 받고 지정유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제지정을 받고자할 때에는 지정 유효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4조(휴업일 및 영업시간) ①— ----- 1. 일요일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4.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지정절차) ① ----- ----- ----- ----- 1. ~ 4. (현행과 같음) 5. -----5년----- ----- ----- 6. ~ 7. (현행과 같음) ② ----- 5년 이상 10년 이내로 -----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제지정) ① ----- ----- ----- ----- ----- ----- -----	② ----- 5년으로 -----

현행	개정안	수정안
② 시장은 제1항의 도매시장법인 신청서를 검토하고 직전 지정유효기간 동안의 도매시장법인의 중앙평가 결과를 토대로 하여 지정 유효기간을 3년이상 1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정하여 도매시장법인 지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7조(경영업무) ①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5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경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4조(허가조건) 시장은 중도매업 허가시 시행규칙 제16조제 1항제 7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거래금액, 시설사용계약, 보증금등의 허가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25조(허가절차) ①도매시장에서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중도매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허가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는 제2호 및 제2호, 법인인 경우는 제3호 내지 제6호에 한한다. 1. ~ 5. (생략) 6.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 ②허가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 ⑤ (생략)	② ----- ----- ----- -----5년----- ----- 제17조(경영업무) ① ----- --법 제35조제4항----- ----- ----- -----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허가조건) ----- -----시행규칙 제16조제 1항제 7호----- ----- 시설사용허가 또는 계약----- ----- 제25조(허가절차) ① -----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해당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② -----5년 이상 10년 이내로----- ③ ~ ⑤ (현행과 같음)	② -----5년으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32조(보조경매 참가자 운영) 중도매인이 본인 또는 대표자외의 자로 하여금 본인 또는 대표자를 대신하여 경매에 참여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7호서식의 보조경매참가자 운영신청서를 7일전까지 시장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제32조(보조경매 참가자 운영) — ----- ----- ----- ----- ----- ----- 다만 중도매인 본인 또는 대표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신병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을 할 경우 그 기간 2. 해외여행, 연수, 그 밖에 장기 출타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개설자)이 인정하는 사유의 기간	
제38조(출하자 등록)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등은 별지 제 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출하자 신고) ----- ----- ----- ----- ---출하자 신고서----- -----	
제43조(장가 또는 수의매매) ①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가매매 또는 수의 매매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건고추, 마, 우엉, 연근, 갓, 취나물, 산나물, 달래, 고사리, 두릅, 고들빼기, 죽순, 무말랭이, 고구마줄기, 토란줄기, 호박고지, 박고지	제43조(장가 또는 수의매매) ① — ----- ----- ----- --- 1. 건고추, 마, 우엉, 연근, 갓, 취나물, 산나물, 달래, 고사리, 두릅, 고들빼기, 죽순, 무말랭이, 고구마줄기, 토란줄기, 호박고지, 박고지, 콩나물, 깎마늘, 고춧가루, 도토리, 오렌지, 바나나, 파인애플, 부추, 적겨자, 청겨자, 적근대, 근대, 적치커리, 치커리, 청경채, 파세리, 케일, 뉴그린, 알배기, 신선초, 당귀, 비타민, 비트, 알비트, 레드, 차콘, 샐러리, 양상추, 브로콜리, 레드쉬, 레몬, 적채, 마늘쫑, 열무, 아욱, 돌나물, 참나물, 비름, 쑥갓, 달래, 깎토란, 상추, 파프리카, 무순, 새싹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